

- 계약기간

- ① 입소의뢰나 신청 시 입소기간(계약기간)을 급여제공계약서상에 명시토록 하며,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입소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계약기간을 명시하도록 한다.
- ② 계약만료 시에는 입소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 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요양원에서 서비스 종료된다.

- 계약목적

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어르신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입소기간,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관리를 보호하고,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- 월이용료 기타 비용 부담액

서비스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매년 「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및 세부사항」의 규정에 따른다.

- 신원인수인의 권리·의무

- ① 신원인수인(보호자 또는 보증인)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.
 1.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요구 할 수 있는 권리
 2.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·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
 3.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·외출에 관한 권리
 4. 입소자의 생활 시설환경에 관한 안정성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
 5. 입소자의 생활 공간을 개방하여 확인 할 수 있는 권리
 6. 입소자에 대한 건강, 식사, 생활상담, 조언 및 생활 편익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
 7. 입소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 할 수 있도록 요구 할 수 있는 권리
 8. 보호자 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, 건의사항 등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
 9. 입소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
 10.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, 퇴소(전원)시 연계기록지를 요구 할 수 있는 권리
 11. 시설의 협약·연계병원 외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지정한 병원을 이용 할 수 있는 권리
- ② 신원인수인(보호자 또는 보증인)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.
 1.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·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
 2.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,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
 3.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
 4.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의무
 5.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·입퇴소 절차·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 의무
 6.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·집기 등의 오손, 파손,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

- 계약의 해제

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.

1. 입소자가 사망하였을 때
2.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건자로 판정될 때
3.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
4. 전염성 질환 등 입소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